##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88 발의연월일: 2023. 8. 11.

발 의 자:조경태・金炳旭・윤재갑

정경희・류성걸・이태규

권은희 · 임이자 · 정동만

박성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의 「형법」에 따른 상해와 폭행의 죄, 협박의 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"교육활동 침해행위"로 규정하며, 관할청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및 학생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교원을 상대로 악의적인 신고와 민원 등을 제기하며 교원을 가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급증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 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「형법」에 따른 무고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##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중 "제2편제25장(상해와 폭행의 죄)"을 "제2편제11 장(무고의 죄), 제25장(상해와 폭행의 죄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5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        | 제15조(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   |
| 한 조치) ① 제3항에 따른 관         | 한 조치) ①             |
| 할청과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에 따른 학교(이하 "고등학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이하 각급학교"라 한다)의 장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(이하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"교육활동 침해행위"라 한다)를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회복에 필요한 조치(이하 "보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호조치"라 한다)를 하여야 한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1. 「형법」 <u>제2편제25장(상해</u> | 1 <u>제2편제11장(무고</u> |
| <u>와 폭행의 죄)</u> , 제30장(협박 | 의 죄), 제25장(상해와 폭행   |
| 의 죄), 제33장(명예에 관한         | 의 죄)                |
| 죄) 또는 제42장(손괴의 죄)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 2. ~ 4. (생 략)
 2. ~ 4. (현행과 같음)

 ② ~ ⑥ (생 략)
 ② ~ ⑥ (현행과 같음)